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128,234,230 | 33,847,027 |
| 일반회계 | 865,729,005 | 25,971,870 |
| 특별회계 | 262,505,225 | 7,875,15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86,087,551 | 5,582,627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80,613,000 | 2,418,39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49,492,470 | 1,484,774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55,982,081 | 1,679,462 |
| 기타특별회계 | 76,417,674 | 2,292,53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3,594,003 | 107,820 |
|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| 3,002,596 | 90,078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00,000 | 3,000 |
|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| 3,582,452 | 107,474 |
| 교통사업특별회계 | 13,325,338 | 399,760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31,171,977 | 935,159 |
|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| 21,641,308 | 649,239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 세입·세출 예산 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 채무부담행위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 계속비사업조서 "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 명시이월사업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189,60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